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point4767@labors.or.kr)

I. 서론

전염병 코로나19는 노동시장에 심각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썰물이면 오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듯,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고용충격이 크다는 사실이 <표-1> 수치에서 확인되었다. 3,4월 서울의 고용지표에서는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이 전국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고, 최근 5월에는 전국 고용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서울은 아직 코로나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내놓는 고용지원정책을 넘어, 서울시의 자체적인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넘어, 고용, 소득, 사업을 지원하는 시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쏟아져 발표되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기획·수립하는 긍정적인 노력 이면엔, 정책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면도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현황 파악을 넘어, 향후 노동복지정책과 행정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본 글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내놓은 주요 지원정책을 대상별(임금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로 정책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고용유지와 고용소득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세밀히 다루어지고, 임대료 지원, 사업자금융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간략히 작성된다. 한편, 생활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을 위한 정책들(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비쿠폰지원)은 제외되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단계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일부 언급한다.

	전국 실업률	서울 실업률	전국 고용률	서울 고용률	전국 15-64세 고용률	서울 15-64세 고용률
1월	4.1	4.2	60.0	60.0	66.7	66.8
2월	4.1	4.3	60.0	60.1	66.3	66.8
3월	4.2	5.0	59.5	59.0	65.4	65.6
4월	4.2	5.3	59.4	58.6	65.1	65.1
5월	4.5	5.8	60.2	59.1	65.8	65.8

II. 임금근로자 대책

1. 휴업·휴직 지원¹⁾

정부의 임금근로자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업주에게 유급휴직 및 고용유지를 최대한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무급휴직에 이미 처해진 임금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금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휴직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지급대상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과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이다. 명령휴직은 비록 형식은 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 2005.2.18., 2003다 63029).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이슈가

1) 휴업수당,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휴직과 휴업을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냐, 또는 천재지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냐는 논쟁이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²⁾’을 확대 지원하였다. 최대한 유급휴직을 유도하고 고용을 유지하려, 사회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직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자연스레, 무급으로 잠정적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³⁾을 기획하도록 지원하였다. 산업·고용형태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서울형 무급휴직자 특별지원금).

그러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무급휴직자에 대한 이슈가 잦아들지 않자, 중앙정부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5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무급휴직자 중 일정 소득수준 이하(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소득지원(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과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가 ‘서울형 무급휴직자 특별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즉,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소득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초점을 맞춘

2)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영세자영업자 대책’ 부분에서 한다.

3) 이는 흔히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명명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자와 특고·프리랜서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 부분에서는 무급휴직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특고와 프리랜서에 관한 내용은 후술된다.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급여적절성은 낮지만 소득요건을 보지 않음으로
서 대상이 더 포괄적인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
편성을 줄이되 급여적절성을 높인 제도를 중앙정부가 별도로 도입한 것이다.

	소득조건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무급휴직 일수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2.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영세사업주, 특고·프리랜서, 취약노동자에게 낮추
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요금을 경감·유예하였
다. 건강보험료는 산정보험료액이 직장·지역가입자 세대 중 하위 100분의 20이하
인 대상에게 월 건강보험료 50% 3개월 (3~5월) 간 지원하였고, 국민연금과 고용
보험은 희망자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3. 해고 및 구직⁴⁾

임금근로자가 이번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새로 구직을 하고자 할 때, 활용가
능한 정부 제도는 실업급여, 서울형 알바 청년 긴급수당,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
수당이 대표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
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에 의
해 정해지고(최대 66,000원), 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

4) 실업급여, 서울형 알바 청년 긴급수당,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보험에 의한 해고 지원은 최근 전통적 노사관계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사각 지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 이후에 임금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전국민고용보험'이 정책이슈로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일찍이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집단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에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생각하고, 이들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지급내용은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에게 3~4월 긴급수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일부 집단에 대한 노력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의미있다고 평가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하려는 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을 일부 안정시킨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 단계인 3단계에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한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예정으로 폐지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적으로 재도입되었다.

4. 서울형 노동상담 및 심리상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권의 침해와 근로자의 심리불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서울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서울형 노동자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통해, 근로자들의 취약함과 상처가 사회적으로 완충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수동적 지원보다 보다 적극적인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상담과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하는 행정적 이슈가 발생하였다. 즉, 노동권에 대한 법적지원, 심리지원, 정책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평가가 나타난 것이다.

법적지원과 정책지원을 함께 제공하고자 정책안내문과 홍보물이 상담자에게 제공되었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정책플랫폼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책당국과 체계적인 소통 창구가 부재하여, 정책상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가

령, 쏟아져나오는 정책들 간의 관계, 정책들의 세부내용 등 정책이해도와 관련된 부분이였다. 이는 법률과 정책상담을 한번에 제공하는 것에 아쉬운 부분이였다.

5. 가족돌봄 지원⁵⁾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마련 하였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1인당 1일 5만 원을 지원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전일제→시간제로 전환)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돌봄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이용 경험은 향후 일과 가족돌봄의 균형을 사회적으로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과 같은 직군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고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6. 생활비 저리 용자⁶⁾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 등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다(용자항목당 200만~1250만원).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용자수요가 광범위하게 커질 것으로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또한,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주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된다.

5) 가족돌봄 휴가지원 제도, 워라밸장려금

6) 생활안정자금 용자, 건설노동자 생계비 용자

Ⅲ. 특고·프리랜서 대책

1. 생계비 지원⁷⁾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⁸⁾와 '프리랜서노동자'를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앞서 설명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패키지로써, 지방정부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세부정책을 기획하였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1회 지급한다.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3~4월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신청의 용이성을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였다.

특고와 프리랜서가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인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0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여지급기간은 1개월로 정한 것이다. 또한, 신청5부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노력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아쉬움 점은 특고와 프리랜서라는 표준화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고려가 행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조건 중 하나로 일 또는 소득의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표준신청양식이 없어 혼란이 컸다.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소득조건과 소득 매출 감소 수준을 고려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금근

7)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연소득5~7천만원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소득지원(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과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가 '서울형 무급휴직자 특별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더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소득·매출 조건		
	소득조건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소득·매출 조건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2. 생활비 용자⁹⁾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한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담보없이 연 1.5%의 저리로 용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가입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하지 못한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다수로,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4대 보험료에 대한 요금이 경감·유예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지원내용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산재보험료는 30% 감면받거나 납부유예 가능하다.

4. 구직 및 훈련¹⁰⁾

9) 임금감소생계비 용자, 소액생계비 용자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다면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과거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였지만, 종사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도 구직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전문성 향상과 제반 활동 등 구직활동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것은 제도적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IV. 영세자영업자 대책

1. 고용 및 사업 지원¹¹⁾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유급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경영사정 악화로 시행한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정책(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지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을 대응하는 핵심 제도로, 경영악화에도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 지원한다. 사업주는 본인의 귀책에 의한 휴업·휴직이라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이 휴업수당의 최대 90%(1일 최대 66,000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67%이던 지원 규모가 90%로 한시적

10)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11)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지원

확대되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제도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게 평균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충격을 주면서, 정부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7~4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핵심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제도적 배제와 간접고용,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취약계층의 실질적 배제의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특고·프리랜서, 일일단기노동자, 초단시간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 용역과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가 해당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배제에 대한 염려로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제도들, 청년 알바를 위한 서울시 지원, 5인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보편성과 급여성적절성을 부족하여 미흡한 점이 많으며, 초단시간근로자와 간접고용에 대한 정책적 보완은 눈에 띄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휴업수당의 사용자 부담분 조차 부담스러운 사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휴업수당을 일시적으로 용자해주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는 제도(고용유지자금 용자사업)를 신설하였다. 이는 향후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던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줄임으로서, 무급휴직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하고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사용해야 했다. 반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업을 1개월 실시하더라도 무급휴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노사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제외된다. 10인 이상 사업장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영세사업장(10인 미만)의 무급휴직자는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영세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받은 집단으로, 정부는 이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지원>을 도입하였다. 중앙정부는 연매출과 매출감소수준을 고려하여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 ×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연매출을 고려하여 월 70만원 씩 2개월 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도심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의 긴급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앞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선도적 특수사업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장래의 위험에 대비¹²⁾

<노란우산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계속 논의될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은 특고·프리랜서, 시간제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서 법적·실질적으로 배제되었던 대상을 포괄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고용보험을 기존 임금에 기반한 '피용자 보험'에서 소득에 기반한 '취업자 보험'으

12) 노란우산제도

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노란우산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의 통합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임대료 지원¹³⁾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주면 세제혜택 및 보수지원을 해주기로 했다(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또한, 정부소유의 건물에는 임대료가 낮추어주거나, 전통시장에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추면 관련 정부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재상 및 출연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4. 사업자금 융자¹⁴⁾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는 당장 사업을 유지할 자금이 긴급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신용등급과 매출규모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V. 시사점

위기는 그 사회를 성숙시키듯,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정책도 발전해야 한다. 본 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지원정책을 임금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

1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재상 및 출연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4)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융자 지원,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서울형 골목상권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출 지원,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자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고용안전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정책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정책에서 가장 이슈가된 부분 중 하나는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관련된 것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무급휴직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고용과 소득을 지원하는 대응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사회(고용)보험가입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고·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간접노동자, 일일근로자, 5인미만 영세사업장 등 사회보험에서 제도적·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은 사회적 위험을 고스란히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변화하는 흐름속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했던 부분들이 예상보다 크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형 알바청년 긴급수당>이 별도로 도입되었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집단을 완충시켜주기엔 부족하였고,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이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전국민고용보험'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으로 보인다. 즉, 기존 '피용자 보험'에서 '취업자 보험'으로, '임금기반 보험'에서 '소득기반 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간접고용, 자영업자 등 전통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난 집단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하자는 흐름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노란우산제도와 같이 분할된 사회안전망 제도들이 통합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 일일고용,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취약한 계층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공동체와 정부, 사회가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정책에 관한 또 다른 이슈의 축은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특히, 영세사업장 내 무급휴직자는 정책적 사각지대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최소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내 다수는 고용보험에 미가입자가 많아, 실질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영세사업장 내 무급휴직자는 취약성이 높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후의 안전망으로 떨어지게 두기보다, 최대한 노동시장에 근접하도록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에서 지지해주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즉, 영세사업장 내 무급휴직자가 일차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노동시장에 가깝게 해주고, 실업이 되면 이차적으로 최근 도입을 앞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실업부조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설계는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자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부담이 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자가 일차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들을 고용보험의 가입하도록 하는 방향과 제도적으로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지원조건으로 하지 않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즉,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어떤 방향이 맞을지, 과연 두 방향이 대립적인 것인지는 지속적인 정책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산업·노동·사회복지정책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시켜주었다. 위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우선,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이 정착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생활비 용자지원 대상, 워라밸과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은 코로나19의 고용 및 생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사회안정을 위해, 정착화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부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입되기로 예정된 전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고용서비스와 생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구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위기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노동·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노동·사회안전

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수준이 낮아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노동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거시지표에서 확인했듯, 서울은 전국보다 경제의 위기에 취약한 산업·노동시장구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을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혼란을 낮춰줄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코로나19는 시사점을 주었는데, 신속하고 간명한 행정처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우수한 신속성과 처리를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신청5부제, 온라인접수, 대상여부 온라인 확인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계속 강화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부족한 면도 노정되었는데, 특고·프리랜서와 같이 표준화되기 어려운 집단의 행정서류를 복잡성을 완화하고 규격화하는 것이 더 필요해보였다. 특고·프리랜서들은 각종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큰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세밀한 행정접근이 요구되는데, 가령 당사자단체 및 협회 합의를 통해, 필요서류를 유형·규격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¹⁵⁾. 참고할만한 우수한 사례로서, 당사자가단체인 방송작가유니온은 정부당국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된 서류를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노동·심리·정책상담이 한번에 가능한 행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선 요구된다. 노동 취약계층들은 법률적 지식, 활용가능한 자원 등이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심리,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개인서비스가 한번에 이루어진다면, 행정에 대한 만족과 체감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15) http://www.writersunion.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6
방송작가 유니온 우수 사례

[참조1] 정책대상별 지원정책 요약

1) 서울지역 일반 시민 대상

전국민 누구나	중위소득100%이하 시민이라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 (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18일 동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세대주가 요일에 맞게 신청 ·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여부와 금액 조회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87만원) 미만.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변동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원 지급 ·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문의·신청) 다산콜센터(120), 동주민센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배제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329만원) 이하와 재산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변동 · (지원) 가구당 30만 원(1인)~최대 100만원(4인)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290만원) 이하와 재산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변동
기초생활 및 차상위수급자라면	아동수당을 받고있다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라면
저소득층 소비쿠폰지원	특별돌봄 소비쿠폰지원	노인일자리 소비쿠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 4인기준 108~140만원 추가 소비쿠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 아동 1인당 40만원 추가 소비쿠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 4개월 간 월5.9만원 추가 소비쿠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2) 서울지역 노동자 대상

유급휴직·휴업을 하고 있다면 휴업수당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이상 무급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사업주 · (대상) 회사의 사유로, 휴직·휴업을 하는 노동자 · (지원) 평균임금의 70% ·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시 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지원조건)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월 50만원, 2개월 간. 최대 100만원. 최대 49명까지 지원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모두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33-5343), 사업체주소 내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조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사업체 ②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지원) 월 50만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주체) 무급휴직자 직접 신청 · (문의·신청) 6/1~7/20일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covid19.ei.go.kr), 오프라인 7/1~7/20 접수처(추후 공지)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노동자라면	원치않게 해고당했다면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경감 및 유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근로복지공단 · (대상) 원치않은 사유로 해고 · (지원) 일 최대 6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 (지원)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	-----------------------	---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다면	
서울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서울형 노동자 심리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노사관계 및 직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의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 · (지원) 노동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코로나19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소상공인 · (문의) 서울시 감정노동센터(722-2525) 	
코로나로 입원·격리되어, 무급휴가 써야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을 해야한다면	
코로나 생활비 지원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무급휴가를 간다면
	위라벨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받지 못한 자 · (내용) 4인가구 최대 123만원 ·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한 사업주 · (지원) 기업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임금감소 보전금(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80만원)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부모 각각 1인당 10일 간 1일 5만 원 (최대 100만 원)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필요하다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건설노동자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소속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규직) 월 388만원 이하 ② (비정규) 소득요건 미적용 · (용자한도) 1,000만 원 내 임금감소액 · (이자율) 1.5% · (문의) 인터넷신청(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규직) 월 388만원 이하 ② (비정규) 소득요건 미적용 · (용자한도) 200만원 이내 · (이자율) 1.5% · (문의) 인터넷신청(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건)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 · (지원)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3) 서울지역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일감이 없는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라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특고들을 위해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4인기준 건보료 대략 16만 3천원 이하) · (조건) 고용보험 가입 20일 이상 무노동 또는 30% 이상 소득 감소 · (지원) 50만원 현금 · (문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v), 출생연도별 이메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조건) ①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② 소득 25% 이상 감소 · (지원 월) 50만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주체) 특고·프리랜서 직접 신청 · (문의신청) 6/1~7/20일 전담 콜센터(1899-4162) 홈페이지(covid19ei.gov.kr), 오피라인 7/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경감 및 유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생활안정지원 용자가 필요하다면	구직 및 훈련을 한다면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 용자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임금감소) 소속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소액생계)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 · (용자한도) 200만 원 내 · (이자율) 1.5% · (문의) 인터넷신청(welfarekornet.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2020년 신규 참여자 · (지원) 매월 50만원×3개월 (최대150만원)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4) 서울지역 중소기업주 대상

직원에게 유급휴직을 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가 힘든 30인 미만 사업주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10인 이상 사업주를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주체) 중앙정부 · (지원)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10(최대 6만 6천원)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20년에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기간) 3월부터 4개월 간 한시적 · (지원내용) 기존금액에 더하여, 10인 미만은 최대 7만원, 10인 이상은 최대 4만원 추가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들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조건) 영업의 어려움, 휴업·휴직 기간, 피보험자 수,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 여부, 노사합의 여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여부 등이 고려됨.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업종) 월 50만원(150만원 한도), 최대 90일 ② (일반업종) 평균임금 50% 범위 내, 최대 180일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사업주라면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영세사업주라면	50인 미만의 도심제조업 소규모사업주라면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중 19년 연매출 2억 미만인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현금 140만원 (6월과 7월 각각 70만원씩) · (문의) 다산콜센터(120).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 시작하고,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 예정 	<p>②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월 50만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주체) 사업주 직접 신청 · (문의·신청) 6/1~7/20일 전담 콜센터 (1899-4162) 홈페이지(covid19.ei.go.kr), 오프라인 7/1~7/20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또는 소공인 · (지원조건)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 (지원)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최대 3,000만원 지원 · (문의)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면	직원이 가족돌봄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면
유급휴가지원비	워라밸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 최대13만원x유급휴가 기간 · (문의) 국민연금지사 소재지(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한 사업주 · (지원) 기업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임금 감소보전금(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최대80만원)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 (지원내용) 휴업기간 5일 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최대 195만원 · (신청기간) 2020.04~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 (문의) 서울시 경제정책과(2133-5247), 25개 구청 지역경제과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업주들을 위해	임대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주를 위해 (1)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다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경감 및 유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지원내용) 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신청)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 (지원내용)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 (신청기간) 20.04 이후 · (문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 각 구청 일자리경제과
임대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주를 위해 (2)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공유재산 내 임차한 소상공인 이라면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재산 및 출연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20.02~07월 사이 임대료 인하 합의한 전통시장 · (지원내용) 2021년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1년 사업 공모시, 자치구 경유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건설업·운수업·제조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 정부소유임대는 재산가액의 3%→1%로 인하. 공공기관임대는 협의에 따라 20~35%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투자출연기관 내 소상공인 임차인(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음식점업 10억 이하) · (지원) 임대료 6개월 간 50% 감면 · (신청기간) 20.03월~07월

· (신청기간) 2020.03말~4월 ·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33-5542)		· (문의) 서울시청 재산관리부서(2240-8750)
장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싶다면	기업자금이 어려워졌다면 (1)	
서울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10일 이내의 신속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지원주체) 서울시 · (노란우산) 위기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제상품 · (대상)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주 · (지원) 납부금액 중 월 2만원 1년 지원 · (문의)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	· (주체) 서울시 · (대상) 아래 두 가지 경우의 소상공인 ① (확진피해기업) 확진자 방문 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격리로 영업일의 반일 이상 중단한 소상공인 ② (직간접피해기업)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장기저리융자 및 보증우대 · (방법)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가능 ① 신용재단 상담 후 지점 방문 ② 신용재단 홈페이지 신청 후 전화상담 ③ 시중은행 방문(재단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우대사항)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하여 신속 · (신청 및 문의) 아래 중 하나 ① 신용보증기금(1588-6565) ② 기술보증기금(1544-1120) ③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기업자금이 어려워졌다면 (2)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15%이상 고금리로 부담이 크다면
서울형 골목상권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서울시 ·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의 소상공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하 ② 서울에서 업력 6개월 이상 ③ 신용등급 1~7등급 · (지원)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변동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방법) 유선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 개인신용등급 4~10등급의 소상공인 · (용자내용) 금리 1.5%, 한도 1,000만원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30), 전국 62개 지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서울시 · (대상) 3개월 이상 15% 이상의 고금리 채무 상환중인 소상공인 · (지원) 15%이상→2.3%로 전환.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방법) 유선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기업자금이 어려워졌다면 (3)		
1~6등급의 초저금리 대출 최초 신청 사업주라면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둘 중 하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6등급의 고·중신용의 초저금리 최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 기업신용 1~3등급의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p>소상공인</p> <p>② 1~3등급의 고신용의 소진공 자금 신청 후 아직 미지급된 소상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내용) 1.5% 금리 ①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②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한도 · (문의)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내용) 금리1.5%(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 · (문의)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	--